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하중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7
----------	------

발의연월일 : 2020. 11. 25.

발의의원 : 하중환 의원, 김은영 의원

1. 제안이유

-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의 원칙 (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대상, 기준, 신청 및 지급, 중지, 환수조치(안 제4조~제9조)
- 다. 지도·감독, 준용 (안 제10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로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만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 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 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그를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 및 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	맞벌이 ☐ 취업 한부모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달 성 군 수 귀 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달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